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34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 : 민형배ㆍ이개호ㆍ정동영

박지원 • 양부남 • 김문수

김현정 • 박수현 • 안도걸

김준혁 • 문정복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특정대학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입 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신설 및 제41조의2).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법관 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제42조제1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이 중 4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 중 "3명."을 "8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법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대법관을 임명할 당시 제4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4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법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생 략)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2		
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			
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대법관</u>		
	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제42		
	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u>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2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			
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u>	<u>15명</u>		
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u>구성하며, 이 중</u>		
	4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3		
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	8		
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u>3명.</u>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 ⑨ (생 략)

-----<u>8명</u>. <후단 삭제>

④ ~ ⑨ (현행과 같음)